#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5 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 곽규택・김희정・이헌승

주진우 • 백종헌 • 김대식

박성훈 • 조승환 • 서지영

이성권 • 정동만 • 정성국

김도읍 • 박수영 • 조경태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법원조직법」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「상법」 제769조부터 제776조 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"책임제한사건"을 해사법 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448호),「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2호), 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0호),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53호) 및 「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454호)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(이하 "제한채권"이라 한다)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(船籍) 소재지, 신청인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, 사고 발생지,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"를 "해사법원의"로 한다. 제3조를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 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#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2조(책임제한사건의 관할) 책임 제2조(책임제한사건의 관할) ---제한사건은 책임을 제한할 수 -----해사법원의-----있는 채권(이하 "제한채권"이라 한다)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(船 籍) 소재지, 신청인의 보통재판 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, 사고 발생지,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또는 제한채 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 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(專屬)한다. <삭 제> 제3조(책임제한사건의 이송) 법원 | 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책임제 한사건을 다른 관할 법원이나 제한채권자의 보통재판적 소재 지의 관할 법원 또는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유류오염 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사건이 계속(係屬)하는 법원에 이송(移 送)할 수 있다.